

2019년도 제1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6. 27.(목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강호갑 위원(분과위원장 대행),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9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301건(안건번호 제2019-57000호~59018호)
 - 회의결과: 네이버 밴드 내 단체채팅방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관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03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9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4쪽에 일본만화 저작물명, 5쪽에 일본만화 명과 게시물 제목이 드러나 있어 비실명 처리를 제안함
- B 위원 :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는데 이의 없음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대로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저작물명과 게시물 제목은 비실명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전번호 제2019-57000호~5901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3,301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5700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애니메이션 영상을 재생하면 오른쪽 하단에서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인 'V RECORDER' 마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서 'ANIMAX' 로고가 확인됨

- A 위원 : 해당 애니메이션의 국내 TV 방영 여부를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애니메이션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애니메이션 전문 TV 채널에서 방영되었고, 현재 유료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가능함

- B 위원 :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5700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57001호는 네이버 밴드 회원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MP4 파일을 공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 보면 정치 관련 토론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여 해당 채팅방에서 불법복제물 공유가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하지만 전문위원이 정보분석전문원과 함께 확인한 결과 채팅방에서 '□□□□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만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해당 채팅방의 대화참여자 수는 28명이고, 실제로 다양한 정치현안에 관한 토론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었음

해당 밴드와 채팅방은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른 이용자가 전송한 불법복제물등도 확인되지 않음

- B 위원 : 전문위원 보고처럼 채팅방 특성상 불법복제물을 게시물 단위로 특정하여 삭제하기 어렵고, 보호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다른 사람들의 대화내용까지 함께 삭제할 우려가 있음
- A 위원 : 단체채팅방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밴드에 가입해야 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밴드에 먼저 가입 후 밴드 채팅방에 입장해야 하며 밴드 회원이 아니면 입장이 불가능함
- B 위원 : 전체위원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을 심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 사안과 유사한 것이 아닌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과거 심의했던 오픈채팅방의 경우 누구나 검색하면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오픈채팅방이 음원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었음

해당 채팅방에서는 음원파일 요청 및 제공과 무관한 대화를 금지하는 자체 규정이 있었고, 불법복제물 공유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면 강제로 탈퇴를 시키고 있었음

당시 오픈채팅방에서는 하루에 100개가 넘는 mp3파일이 제공되고 있었음

반면 이번 사안은 불법복제물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채팅방이 아닌 단체채팅방 참여자 중 한명이 불법복제물을 올린 것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안과 성격이 다름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검색하여 대화방 입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 밴드 가입 후 밴드 내의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게 되는 2단계 구조라는 점이 특이함

단체채팅방을 누구에게나 공개로 하지 않는 한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2인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 비밀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통신내용 이외에 대화방 아이디와 같은 당사자에 관한 사항, 통신 일시, 횟수 등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B 위원 : 기존에 채팅방은 게시물 단위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불법복제물이 업로드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하기 어렵다고 논의한 것으로 기억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의 불법복제물 공유에 관해 논의한 전체위원회 심의에서 보호원이 실시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채팅방을 자체 모니터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만약 민원인이 채팅방 내 불법복제물 공유를 신고하였고 실제로 불법복제물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사안이라면 가결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음

- B 위원 :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밴드에서의 단체 채팅방을 저작권보호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전문위원 의견대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밴드 단체채팅방에 관해서 전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A 위원 : 이번 사인의 밴드는 누구나 가입이 자유롭게 허락이 되는 밴드고, 단체채팅방은 밴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채팅방인 것으로 보임
 단체채팅방이기 때문에 밴드의 게시물 형태가 아니고 회원들이 공유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밴드와 밴드의 단체채팅방에서 이뤄지는 불법복제물 공유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
 민원인이 보호원에 신고한 건에 대해 민원 처리하는 것은 보호원의 의무임
 다만,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밴드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였으나 민원 건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보임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이 아닌 사실관계 조사할 때 확인된 저작물로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임
 해당 건은 전체위원회에 부의하여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지금까지 우리 심의위원회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는 과정의 적법성 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직접적인 이유로 보호원 조사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는 없었음
 보호원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가 부결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보호원의 증거수집의 수단과 방법이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조사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A 위원 : 민원인이 보호원에 신고할 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춰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지난 전체위원회 후 보호원의 온라인 조사 담당 팀에게 민원인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의 불법복제물등 전송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였음

실제로 보호원은 실시간 대화방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행정기관이 특정 밴드에 가입한 후 실시간으로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밴드 내 단체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불법복제물등의 전송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가 법익의 균형성, 수단·방법의 상대성 내지 비례성을 결여한 것은 아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

참고로 최근 여성가족부가 법원이 발부한 통신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모니터링 하는 행위가 통신 감청 또는 인터넷 검열에 해당하는지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단체채팅방 조사가 통비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문제와 별개로 이러한 방식의 조사가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음

- B 위원 : 이러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A 위원 : 민원인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가 부결을 하면 실망하거나 저작권보호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오해할 수 있을 것임
민원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단체채팅방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았으나 민원 신고한 저작물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해당 민원을 계속 진행하길 원한다면 심의 요건을 갖춰 미비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전달할 필요가 있음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네이버 밴드 내 단체채팅방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인 안건번호 제2019-57001호는 심도 있는 논의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5700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국내 사이트인 '▲▲▲'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은 심의 하루 전인 2019. 6. 26. 저녁방송까지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음
'▲▲▲' 사이트에는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최신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수의 불법복제물이 존재함
- A 위원 : 허가되지 않은 웹하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만약 저작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국내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가능했을 것임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B 위원 : 웹호스팅 사업자인 '★★★★★'에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처음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가결이 되면 해당 인터넷호스팅사업자에게 처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자가 시정권고 공문을 수신한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A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 게시물을 올리는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웹호스팅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전체위원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 처리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 문제는 전체위원회에서 수 차례 다룬 것으로, 올해 개최한 전체위원회에서도 법 해석 보다는 법 개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 B 위원 : 현행 저작권법에서 웹호스팅사업자 외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A 위원 : OSP 직접 게시에 대해서도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 부분을 문체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에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법 개정을 건의하겠음

- A 위원 : OSP 직접 게시에 대한 건이 반복되어 심의 요청되고 있는데 문체부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작권침해 예방을 해야 하는 부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심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OSP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안내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협조공문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음

- A 위원 : 해당 사이트는 웹하드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며 특수한 유형의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여 승인받고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해당 사업자는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호원이나 문체부가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원 원장이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보호원이 시정권고 심의가 아니라 국내 사이트에 대한 공문발송 등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물론 보호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할 수도 있으며, 실제 공문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음

- A 위원 : OSP 직접 게시물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정권고를 가결하지 않지만 보호원은 '▲▲▲'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해야 할 것임

- A 위원 :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음
저작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보호원은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이 필요함

- B 위원 : 전체위원회에서 OSP 직접게시에 대해 2~3번 논의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안전에 상정하게 되면 동일한 논의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A 위원 : 저작권법 개정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안들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현행법상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심의위원회에서 법상 다룰 수 없으니 부결을 하면 외부에서는 불법 복제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나 보호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가 법상 제한으로 인해 부결로 의결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부결과 별개로 보호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시정권고가 아닌 협조공문을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에게 발송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업을 영위하므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공문발송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A 위원 : 보호원이 저작권보호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

과거 우리 심의위원회가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해 불법성을 심의했을 때 심의대상 사이트의 전체 게시물 중 불법복제물 비중이 70%이상이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음

OSP 직접 게시 사이트에 대해서도 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이 70%이상 이라면 보호원에서 수사의뢰를 하거나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국내에 서버를 둔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해 현재 방심위에서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방심위에서 국내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음

우리 심의위원회와 보호원은 현재 웹호스팅사업자가 삭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시정권고를 하고 있는데, 웹호스팅사업자를 상대로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A 위원 : 특사경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 차원에서 '▲▲▲▲'에 공문을 보낼 수 있음

며, 해당 사이트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권고를 통한 시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문체부 특사경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 A 위원 : 보호원이 '▲▲▲'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알려지면 보호원이 비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정현순 전문위원 : '▲▲▲'사이트가 민원인 신고 건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신고 없이 보호원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 B 위원 : 보호원이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보다는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음
- A 위원 : 문체부 특사경 수사의뢰를 통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사이트 자체를 폐쇄시켜야 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우선 보호원의 인터넷호스팅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집행 결과를 지켜본 후에 보호원이 '▲▲▲'에 저작권 준수안내 공문을 발송하거나 문체부 특사경에게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제안함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57002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57003호~59018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프로그램, 게임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 일반적인 불법복제물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시정을 권고하는데 동의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57003~59018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57000호~59018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0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4.

분과위원장 대행 강호갑

위원 정태호